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6-051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2.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 가.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절차와 수 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 등 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2.6.2)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서면조사('22.6.23.~'22.9.14)를 하였으며,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22. 6. 30. 기준 1,739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일	건수(명)
		'21. 9. 6. ~ '22.6.30	1,739명

나. 개인정보 유출 개요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 서비스'이용 후기 공유요청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의이메일 주소가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되었다.

2) 유출 경과 및 대응

- ('22. 5. 27.) 온라인 민원이 제기되어 유출사실 인지
- ('22. 5. 27.) 민원인과 유선 통화로 유출사고 사과, 사후 처리절차 안내
- ('22. 5. 27.)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 통지, 유출사실 공고문 게시
- ('22. 5. 27.)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3) 유출 규모 및 항목

○○○○○ 서비스 이용자 1,664명의 이메일 주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2. 16. 유출 인지 이후 보호법 상의 의무이행 절차를 즉시 이행하였으며, 전직원대상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조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

이메일 주소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본 사건의 경우 ^①다른 정보없이 이메일 주소만 동보 발송된 점, ^②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를 완료한 점, ^③업무상의 실수로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메일 주소를 개별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동보 발송된 이메일 수신자 그룹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메일 수신자가 사생활을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3조제6항 준수를 소홀히 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	소홀	보호법 §3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개선권고

가.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절차와 수 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12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